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집 기피 대체복무요원 편입 취소 대상 제외〉
■ 부승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15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덕 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부승찬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13.
3. 회부연월일 : 2025. 2.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보충역(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함)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이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 감면이 규정되어 있음.

이에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종전에는 수형을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감면되었음.

그러나 2024년 7월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2025년 1월 시행 예정)되어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이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없도록 변경되었음.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은 병역 기피 목적의 형사처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병역의무가 감면되지 아니하므로,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이후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 입영·소집에 응하여야 하나 대상자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반복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이에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된 경우에도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대체역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지 않고 대체역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단서 신설>	4. ----- ----- ----- ----- ----- ----- ----- ----- ----- ----- ----- ----- ----- ----- ----- ----- <u>. 다만,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여 「병역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한다.</u>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¹⁾에 따르면 대체역으로 편입된 자가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 등에는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함.

□ 한편,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법」 관련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6개월 이상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역기피자의 범죄 의도 실현을 방지하고자 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의 병역 처분 변경을 금지하는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8항 및 제9항²⁾(2025.1.3. 시행)이 신설됨.³⁾

-
- 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4.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5. 「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6. 「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7.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며,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2)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⑧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1.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2.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3. 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4. 법 제88조의2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5. 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⑨ 제1항제2호가목,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전에는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 「병역법」 제88조제1항⁴⁾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수형 후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 의무를 수행하였음.⁵⁾

□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후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대체역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이 금지되어 수형 후 현역 또는 보충역의 신분으로 입영·소집에 응하여야 하나 해당자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소집을 거부할 경우 반복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대체역 편입자 소집 기피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소집기피 인원	-	-	2명	1명	5명

* 자료 : 병무청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 3) 참고로 동 시행령 상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형의 분리 선고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제2206047호)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2025.2.20.)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됨.
- 4)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5) 통상 대체역 소집 기피자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됨.(병무청 설명)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대체역 편입자 중 대체역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지 않고 그 병역 신분을 유지시켜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의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 한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봄.

□ 다만, 현행법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병역법」 제70조 제1항·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도록 규정⁶⁾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람 또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8항 제5호에 따라 수형에 따른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역종 변경을 금지하고 있어 대체역 편입 취소 시 수형 후 반복적인 처벌이 예상되는 바,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 의무 수행 기회 제공이라는 개정안 취지를 반영하여 대체역 편입 취소 예외 사유로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방부 및 병무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고려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가 일정기간 복역한 후 현역병이 아닌 대체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6) 해당 규정 위반자는 「병역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문 의 처
02)6788-5307